

화순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1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11. 11.

다. 상정일자 : 2004. 11. 23

(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산림과장 한두희

나. 제안사유

-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정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
- 예약 및 취소에 따른 예약금 반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여 공익적 기능을 보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오해를 없애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자연휴양림 이용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(안제3조)
- 휴양림 및 시설물 이용시간을 정함 (안제5조)
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정함 (별표1)
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금과 신용카드, 인터넷·폰뱅킹 및 무통장 등의 입금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(안제6조)
- 시설물 사용예약과 예약금 반환처리 근거 규정 (안제8조, 제9조)

3. 겸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,
 -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확충 보완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등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이용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사용료 징수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아울러 관리 운영 측

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
- 단, 입장료 등의 감면 및 면제의 범위, 예약금 예치의 기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,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및 물가대책심의회 심의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효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7. 첨 부 :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

화순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(이하 “휴양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휴양림 :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서 역할과 산림소유자(산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)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휴양림 조성계획에 의하여 휴양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말한다.
2. 휴양림관리운영자 : 해당 휴양림을 시설한 자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.
3. 입장료 :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·탐방·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4. 시설사용료 : 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, 숲속수련원, 캠핑장, 주차장, 썰매장 등 기타 휴양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.
5. 수입금 :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,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,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.
6. 일일수입금 : 00:00 ~ 24:00까지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말한다.
7. 징수담당자 : 휴양림의 매표소에서 입장권 등을 발매하거나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를 말한다.
8. 어린이 : 초등학생이거나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9. 청소년 :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10. 어른 : 만20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11. 단체 :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

제4조(관리·운영)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환경오염 방지
2.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확립
3. 이용자에 의한 산림 및 산림경관 보존
4. 기타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등

제5조(휴양림 및 시설물 이용시간) ① 일일개장 시간은 09:00부터 18:00(11월부터 2월까지 17:00)까지로 한다.

② 숲속의집, 및 숲속수련원은 사용일 13:00부터 익일 11:00까지로 한다.

③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은 사용일 10:00부터 익일 10:00까지로 한다.

제6조(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) ①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휴양림을 조성, 개장한 때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(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), 신용카드, 인터넷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관련 장부 및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주차 등) ①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.

② 숲속의집, 숲속수련원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으며, 이때 주차료는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.

제8조(시설물의 사용예약) ① 관리운영자는 숲속의집, 숲속수련원 등의 숙박시설을 사용자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
② 예약한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예약금의 반환)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.

가.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

나.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

다.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

2. 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.

- 가.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금액
- 나.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%를 공제한 금액
- 다.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미입실 할 경우 사용료의 30%를 공제한 금액

②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3일 이내(공휴일 제외)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제10조(손해배상 등)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 시설의 물품과 비품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수입금의 보관)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, 전일 수입금은 익일(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) 오전중에 세외수입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입장료 등의 사용)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)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

(단위 : 원)

구분	명 칭	단 위	요 금	비 고
입 장 료	어 른(단체)	인	1,000(600)	단체 20인 이상
	청 소 년(단체)	"	600(400)	
	어 린 이(단체)	"	400(300)	
캠핑장	야 영 장	1일 1조	2,000	
	야영데크(숙박)	1일 1개	10,000(15,000)	
	오토캠핑장	1일 1조	5,000	
주차장	중 · 소형	1일 1대	2,000	
	대 형	"	3,000	
숲속의집	6평형 (원룸콘도형)	1일 1동	40,000	
	10평형(")	"	60,000	
	10평형(연립콘도형)	1일 1실	60,000	
	13평형(단독콘도형)	1일 1동	70,000	
	14평형(")	1일 1동	70,000	
숲 속 수련원	6평형(연립콘도형)	1일/1실	40,000	
	12평형(")	"	70,000	
	세미나실(39평형)	1일	200,000	
시설 사 용 료	썰매장	어 른	1일/1인	5,000
	청 소 년	"	5,000	
	어 린 이	"	3,000	
물놀이장	어 른	1일/1인	2,500	
	청 소 년	"	2,500	
	어 린 이	"	1,500	
샤워장	어 른	1회/1인	-	
	청 소 년	"	-	
	어 린 이	"	-	
캠프파이어시설		1개소1회	20,000	
정 자		1일1개소	10,000	
매 구 장		1시간당1면	2,000	
족 구 장		1시간당1면	2,000	
잔 디 광 장		1일/1팀	-	

※ 썰매장 및 물놀이장 시설은 개장이후부터 사용료 징수